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96

발의연월일: 2023. 6. 16.

발 의 자:홍석준·박덕흠·지성호

한무경 • 백종헌 • 김용판

金炳旭·김영식·엄태영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,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 제목 중 "피의자의"를 "피의자 및 피고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피의자가"를 "피의자 및 피고인이"로, "피의자의 재범"을 "재범"으로, "피의자의"를 "피의자 및 피고인의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피의자가"를 "피의자 및 피고인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피의자의"를 "피의자 및 피고인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<u>피의자의</u> 얼굴 등 공개)	제25조(<u>피의자 및 피고인의</u> 얼굴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	등 공개) ①
력범죄의 <u>피의자가</u> 죄를 범하	<u>피의자 및</u>
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	피고인이
가 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,	
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	<u>재 범</u>
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	
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, 성	
명 및 나이 등 <u>피의자의</u> 신상	<u>피의자</u>
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	및 피고인의
다. 다만, <u>피의자가</u> 「청소년	
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청소년	<u>자 및 피고인이</u>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	
지 아니한다.	
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	2
에는 <u>피의자의</u> 인권을 고려하	<u>피의자 및 피고인의</u>
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	
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